

월간 주요 이슈

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(2023. 1. 19.)

일부 스키용 안전모, 충격흡수성 · 내관통성 안전기준 부적합

-온라인 판매 스키용 안전모 제품의 안전기준, 표시기준 등 준수 여부 조사 결과-

-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,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흡하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조사대상 10개 중 2개 제품(20.0%)이 관련 안전기준*에서 정한 충격흡수성** 및 내관통성***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외부 충격을 완화하거나 버텨내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.

*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(안전확인 부속서 53 운동용안전모, 국가기술표준 원고시 제2017-032호)

**충격흡수성 :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여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의 성능

***내관통성 :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돌로부터 뚫리지 않고 버텨내는 헬멧의 성능

- 특히 내관통성이 부적합한 1개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채 ‘스키용 안전모’로 광고 및 판매한 것으로 확인됨

※자전거용 안전모는 스키용 안전모와 달리 내관통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스키용 안전모로 사용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

- 스키용 안전모는 착용 시 내피가 머리, 얼굴 등 피부에 직접 닿기 때문 폼알데하이드, 아릴아민과 같은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시험검사 한 결과,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기준*에 적합했다.

*안전기준 :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(안전확인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,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-0195호)

- 스키용 안전모는 ‘운동용 안전모 안전기준’에 따라 모델명, 제조연월 등의 표시사항과 사용상 주의사항을 제품 또는 최소단위 포장에 기재해야 하지만, 조사대상 중 5개 제품(50.0%)이 모델명, 제조연월 등을 누락하였으며, 2개 제품(20.0%)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관련된 시험검사 없이 어린이도 사용 가능한 것처럼 표기하고 있었다.
-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,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, 관계부처에 스키용 안전모의 관리 ·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.